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11
----------	------

발의연월일 : 2021. 4. 12.

발 의 자 : 이정문·민형배·안민석
박상혁·김철민·문진석
김병기·임호선·이용빈
서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 출자, 손실금 보전 및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을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생활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예금과 달리 손실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과 최근 시중금리가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배당비율의 제한이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배제하기 어렵고,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협동조합 관련 입법례에 비추어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출자금 배당비율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67조제1항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조합원이”를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시중금리수준”을 “정관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회원이”를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8조제2항제4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생략)

제67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 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88조(과태료) ① (생략)

②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46조제1항 또는 제67조제1항(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③·④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사업의 이용) ① -----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